

#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 온라인 플랫폼, 원격의료, 핀테크를 중심으로 -

2022. 5.

## ◀ 목 차 ▶

### [ 요약 ]

1. 검토 배경 .....	1
2. 주요 신산업 분야별 현황 국제비교 .....	3
가. 온라인 플랫폼 .....	4
나. 원격의료 .....	7
다. 핀테크 .....	11
3. 규제 개선방안 .....	16
가. 3대 신산업 규제개선 .....	16
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9

## < 요약 >

### 1. 검토 배경

- ▶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 대전환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원격의료 등 주요 신산업 분야 현황을 국제비교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2. 주요 신산업 분야별 현황 국제비교

#### 가. 온라인 플랫폼

: 해외 '선 산업 육성 최소 사후 규제, 우리나라 '산업 발전 초기 과도한 규제'

- ▶ 해외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사후 규제
  - ※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 추진 중  
[EU] 시총 800억유로(106.6조원) 이상 [미국] 시총 6천억달러(757.9조원) 이상
- ▶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발전에 적합한 기술·인프라를 갖추고 해외시장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및 검색배열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설계 원칙 등 과도한 정보 공개, 표준계약서 서면 교부 및 서면 실태조사 참여 등 의무 부과, 금지조항 신설 등

#### 나. 원격의료

: OECD 대부분 원격의료 허용, 우리나라는 원칙적 금지

- ▶ OECD 38개국 중 32개국 원격의료 허용,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금지
  - ※ 원격의료 금지(6개국) :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여 35년째 시범사업 중.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 개선 시급

## 다. 핀테크

: 주요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는 엄격한 사전적 규제로 산업 발전 저해

- ▶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핀테크 산업의 규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 ※ 올해부터 금융부문 마이데이터서비스가 개시되었으나 여전히 활용이 제한적이며, 사전적 규제 강화로 일부 핀테크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상향 추진

## 3. 규제 개선방안

### 가. 3대 신산업 규제개선

: 사전 규제 지양,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① **(온라인 플랫폼)**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은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혁신 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혁신환경 조성
- ② **(원격의료)**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등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 도모
- ③ **(핀테크)**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 촉진

### 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성장단계별 규제장벽 제거, 자율규제 전환, 규제총괄기구 신설

- ① **(신산업 성장단계별 규제장벽 제거)** 혁신기술에 기반한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단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 ②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전환)**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전문가들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민간 주도 행동규범 및 규율체계를 정립하고 기업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자발적 자율규제'로의 전환 필요
  -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 모델 참조
- ③ **(규제총괄기구 신설)** 첨단기술 변화에 따른 융복합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규제총괄 기구를 원스톱(One-Stop) 창구로 신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 증가
  -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거버넌스(하드웨어) 측면과 정책수단(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
    - ※ 거버넌스 측면 : 규제개선 과정, 규제기관 간 협업 및 네트워크 등
    - 정책수단 측면 : 명시적 규제(포지티브식), 대안적 규제(시장 유인, 자율규제, 교육 등)
  
-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 대전환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
  -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
    - \* 우리나라 유니콘기업(비상장,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은 12개로(전체 유니콘 기업 1,051개의 1.14%)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CB insights, '22.3)
  - 우리나라는 기술과 제품, 업종 간 구분이 명확했던 전통산업 중심의 기존 규제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달과 융·복합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 기인한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 환경은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141개국 중 87위로 하위권으로 평가('19년)
      - ※ OECD 상품시장 규제지표(PMR ; Product Market Regulation, '18년 기준) 중 '진입장벽'은 우리나라가 38개국 중 4위, '국가의 경영활동 개입'은 3위로 주요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한 수준
      - ※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31개사의 사업모델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13개), 제한적으로 가능(18개)(아산나눔재단, '19년)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챌린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도 실효성은 미흡

※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정조건 하 규제를 한시 면제하는 제도임. 최근 3년간 632건 승인되었으나, 이 중 법령 개정으로 최종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20%에 불과

※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우리나라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3단계로 검토하는 제도임(①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③ 국무총리). 국조실은 지난해 규제챌린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검토하였으나 최종 개선하지 못함.

□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신산업 분야 현황을 국제비교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팬데믹 이후 경제·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규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도(First-mover) 하기 위해 선진국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 필요

## 2

## 주요 신산업 분야별 현황 국제비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3대 신산업 분야의 국내외 주요기업 비교 시 우리 기업은 비교열위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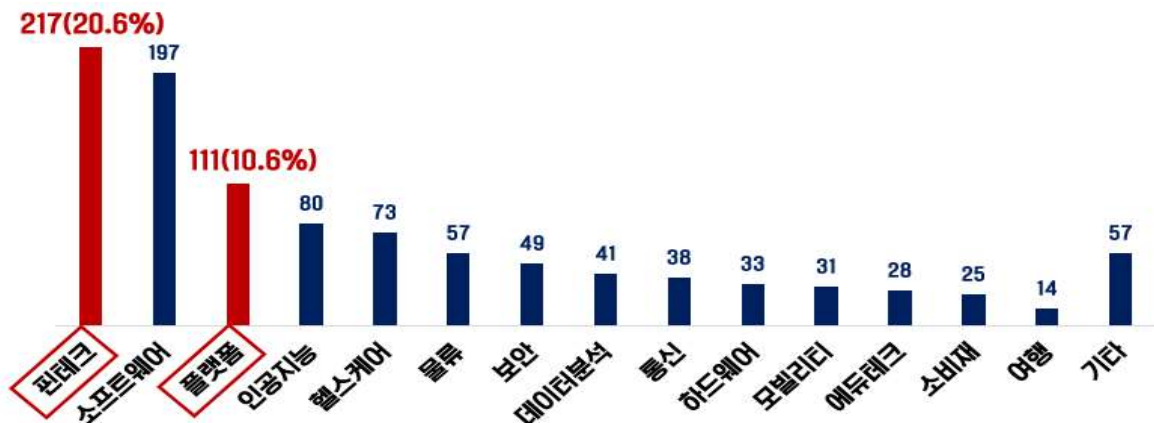
< 표 1 > 산업별 국내외 주요기업 시가총액 현황

구분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한국	네이버 (41.8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 (59.4조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비상장, 약 16.3조원)
	카카오 (38.7조원)	셀트리온 (24.4조원)	카카오페이 (14.7조원)
해외	아마존닷컴(미국) (1,857.5조원)	화이자(미국) (358.7조원)	페이팔 홀딩스(미국) (135.0조원)
	구글(알파벳, 미국) (1,971.6조원)	존슨앤존슨(미국) (609.3조원)	아디엔(네덜란드) (69.4조원)
	메타 플랫폼스(미국) (705.3조원)	로슈(스위스) (414.5조원)	클라르나(스웨덴) (비상장, 약 55조원)
	텐센트(중국) (630.4조원)	아스트라제네카(미국) (131.5조원)	체크아웃닷컴(영국) (비상장, 약 48조원)

주 : 1) 시가총액은 2022.4.28 종가기준, 환율은 2022.4.28 서울외국환중개 고시기준  
 2) 토스(서울거래비상장), 체크아웃닷컴(당사 홈페이지), 클라르나(CB Insights)는 추정치임.  
 자료 : 한국거래소, 나스닥, 뉴욕·홍콩·스위스 거래소,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AMS)

□ 신산업 중 전 세계 유니콘기업의 1/3(31.2%)을 차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핀테크 산업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원격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선도국가와의 규제환경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그림 1 ] 전 세계 산업별 유니콘 기업 현황(단위 : 개사)



자료 : CB Insights(2022.3)

## 가 온라인 플랫폼

### (1) 해외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사후 규제

#### □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선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규제 논의

-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 중이며, 미국은 별도 규제 입법이 존재하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디지털 시장의 경쟁 회복을 위한 규제 입법 추진 중

※ EU 이사회 규칙('20.7.12 시행)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나 제재규정을 자국법에 신설토록 하여 이행강제성이 없으며, 법제화 중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은 연매출 및 이용자 등 요건\*이 까다로워 소수 기업에만 적용

\* 연 매출 65억 유로(약 8.7조원)이고, EU 3개국 이상 이용자 4.5천만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규제 적용. 최근 대상 기업 요건에 ① EU 역내 거래액 80억 유로(10.7조원)이상, ② 시가총액 800억 유로(106.6조원) 이상 추가(김현경, '22.4)

※ 미국은 디지털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나 요건\*을 두어 소수 기업에만 적용

\* ① 시가총액(또는 연 순매출) 6천억 달러(757.9조원), ② 월간 활성 사용자 수 5천만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 이용업체 수 10만 개 이상, ③ 핵심 거래 파트너(플랫폼 이용업체가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여 시장 진입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기업)(김현경, '22.4)

#### [ 참고 ]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현황

- (EU) 2015년 논의 시작 후 면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워크숍, 규제 영향평가 등 4~5년에 걸친 수 차례 법안 수정을 통해 세계 최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 제정('20.7월 시행)  
-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제정 추진 중
- (미국) 별도 규제 입법이 존재하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5대 법안이 발의되어 법제화 추진 중
- (일본)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 개입이나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는 원칙 견지  
※ 라쿠텐, 야후 등 자국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자국기업은 대규모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

## (2)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 추진

□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망 온라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수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며, 소관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상황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법안 내용 측면에서도 플랫폼과 이용자간 규율 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규율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음.

-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규제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 신고의무, 표준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서면 실태조사 참여 등 다양한 의무 부과

- 법안에 따라 수수료·광고비 등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설계의 주요 원칙, 수수료·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하도록 기업의 표시·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명시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21.1)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안)은 규제 적용대상\* 및 규제 수준\*\*에 있어 타 국가보다 과도하게 설정

\*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 [정보 공개항목 과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기간·내용·대가 등, 온라인 플랫폼상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 관련 사항 등  
[금지 조항] 계약해지시 사전통지 의무, 표준계약서 서면교부,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등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제시('21.11.24)한 수정(안)에는 적용대상 기준이 당초(안)보다 상향되어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해외 기준\*보다 엄격
  - \* 규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은 유럽(DMA기준) 연매출 8.7조원(시총 106.6조원) 이상, 일본 2~3조원 이상인 반면 우리는 1천억원(공정위 수정안) 이상
  - ※ 온라인 플랫폼 거래 특성상 중개거래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중개 거래금액 규모가 해당 기업 규모 및 기업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코리아스타트업포럼, '21.4)
-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나, 관련 기업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
- 지침 제정(안)은 오히려 스타트업 도태를 초래하고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더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1)

## 나 원격의료

### (1)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원격의료 허용,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금지

□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

- 원격의료 금지(6개국) :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 ※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
- 원격의료 허용(32개국) :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
  - ※ 다만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규정과 전략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 규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비대면 의료 관련 국가 법률은 없지만 광범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허용

#### [ 참고 ] 주요국 원격의료 추진 현황

- (미국) 1997년 균형재정법 제정 이후 복지부 내 원격의료 활성화 전담반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19년 시장 규모가 약 24억 달러(2조 9천억 원)까지 성장
- (영국)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의거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은 2004년부터 본격 추진
- (일본) 1997년 12월 24일, 후생노동성이 9개 질환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4월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허용

- (중국) 1999년 원격의료기관, 원격의료 대상, 환자의 동의권 등을 규정하면서 원격자문 수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여 육성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는 약 39억 달러(4조 7천억원)에 달함.

**< 표 2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별 원격의료 지원정책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원격의료에 대한 국영 건강보험 메디케어의 커버리지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개인정보 준수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메신저로도 진료 가능
영국	·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모든 1차 병원 진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유 - 일반의 진료(GP, General Practitioner)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유
일본	· 국영 건강보험(NHI)는 원격의료 대상을 '초진 환자'로 확대 · 모든 약으로 '처방 약'의 범위를 확대, 기존 금지했던 처방 약 배송까지 전면 허용
호주	· 국영 건강보험(MBS) 커버리지에 원격진료를 포함
프랑스	·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원격진료 가능 범위 확대 · 비대면 진료를 보험으로 100% 커버

자료 :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 제안 발표회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 중

- 전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은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14.7% 성장(미국 Statista)하였고, 향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20.5% 성장(2020~2027년)할 전망(Global Market Insight, '21.6)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 잔존.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 시급**

□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였으나, 의료법상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여 국민 불편 초래

-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국민 불편 초래
-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 차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하였으나,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가 한시·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완화 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0.2) 이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 허용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개정·시행('20.12)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이슈분석, '21.8)

※ 원격의료 규제는 의료수가 설정과 의료안전 문제, 대형병원 편중 심화 등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표 3 > 우리나라 원격의료 추진 경과**

시기	주요 내용
1988년	· 최초 서울대병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 (서울대병원-연천보건소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
1990~1991년	· 서울대병원-연천보건의료원, 경북대병원-울진 보건진료원, 춘천 성심병원-화천 보건의료원 시범 지정
2002년	· 의료법 개정안 의결(3.30),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조문 신설(제목은 원격의료지만 실제 내용은 의사 상호 간 원격자문에 불과)
2010년	· 의료취약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제출(4월), 폐기('12.5)
2014년	· 동네 의원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제출, 폐기('15.5)
2016년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재제출(6월), 법안심사소위 부결('17.3)
2019년	· 복지부, 원격진료 명칭 '스마트진료'로 바꿔 재추진(3월)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특구,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7월)
2020년	· 국조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화상담 또는 대리처방 한시 허용(2월) · 복지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발표(3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12월)
2021년	· 국조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원격의료를 검토했으나, 현 제도 유지로 결과 발표,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로 지속 논의할 계획(10.27)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각 연도 보도자료 참조, 재구성

## 다 핀테크

### (1) 망 분리,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관련 규제,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엄격

□ 해외에서는 망 분리\*를 보안 수단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도,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 망 분리 도입 및 적용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거나, 사후 규제 적용

\* 망 분리 규제란 사이버위협, 정보유출 등 보안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

#### [ 참고 ] 주요국 망 분리 규제 현황

- (미국) 망 분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별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 제시
- (호주) 방화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망 세분화를 할 수 있다는 강제성 없는 권고
- (EU)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망분리 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적용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시 2천만 유로 혹은 전년도 매출액의 4% 내 과징금 부과)

< 표 4 > 해외 주요국 망분리 규제현황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EU
망분리 규제현황	○	X	X	X	X	X	X
규제 주체	금융위원회	산업정보기술부	사이버전략본부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	사이버보안센터	사이버보안센터	EU네트워킹보호원
내용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대상 망분리 의무화	보안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 취할 것을 규정	보안을 자율적으로 지킬 것을 규정	의무화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만 제시	강제성 없는 권고	강제성 없는 권고	강제성 없는 권고

자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21.9),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 제안 발표회

□ 우리나라 망 분리 규제는 해외보다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저해

\*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변화를 통칭

- 과도한 수준의 망 분리 규제는 기업의 개발 효율 및 생산성 저하, 인건비 증가, 망 분리 구축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금융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였고, 망 분리 규제의 중장기 개선 계획을 발표(4.15)하였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여전히 핀테크 산업 혁신을 저해\*\*

\* `15년 업무상 대외기관과 연결이 불가피(금융공동망 연결 등)하거나 비상시 업무 처리 등의 경우 예외 인정, `19년 클라우드 이용 시 물리적 망분리 예외 인정

\*\* 망 분리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한국핀테크산업협회, `19.6) : 업무 생산성 50% 감소, 개발 부문 인건비 30% 증가, 추가 소요비용 5억 원 필요

□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개시된 금융부문 마이데이터서비스는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며, 사전적 규제 강화로 일부 핀테크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상향 추진 등 포지티브 규제 기조 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데이터 3법 시행(`20.8)

-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가능해져 올해부터 금융부문 마이데이터사업\*이 개시되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

\* 금융 마이데이터사업이란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취합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정보에 대한 통합 조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일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서 금지하는 '중개'로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함.

\* 금소법(`21.3.25 시행) 이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뱅크샐러드 등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21.8~9)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차세대 유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규제 성격의 과징금 상향\* 추진 중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개정)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제

< 표 5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64조의2제1항) 과징금 부과기준 비교

위반 내용	현행 과징금 규정	개정안
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구체적 기준 시행령 위임
2호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3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4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신 설>	
5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6호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7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미동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8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신 설>	
9호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10호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 설>	
11호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규제 환경은 열악

### □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 전 세계 핀테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89%를 미국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0년 글로벌 핀테크 개발보고서, '21)
- 핀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신생기업) 수는 2016년 36개에서 2021년 159개로 연평균 증가율 35% 기록(PwC, 유니콘 세계에서 살기, '22.1)
  - ※ 글로벌 핀테크 시장 전망(The Business Research, '20.7) : 1,112억 달러('19년) → 1,918억 달러('25년, 전망치) → 3,253억 달러('30년, 전망치)

### [ 참고 ] 주요국 핀테크 산업 지원 현황

- **(미국)** 금융규제가 엄격하지만 핀테크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이를 발판으로 페이스북, 애플페이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성장
  - 규제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비조치 의견서 (No action letter)\*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 \*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합법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에 질의하면 감독 당국이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허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별도 행정처분 불가
- **(영국)** 혁신기술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박스(Scalebox)\* 제도를 시행하여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기술을 금융부문에 접목한 핀테크 기업이 지속성장 하도록 지원·육성
  - \* 기존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강화한 개념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상설화, 기존 사업가 및 법률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지원 등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원스톱 지원(Kalifa Review, '21.2)
- **(중국)** 핀테크 산업에 매우 우호적인 규제 환경(네거티브 규제방식)이며, 대규모 가입자의 거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세계 1위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와 풍부한 기술력으로 금융혁신 유도
- **(호주)**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 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우리나라는 강력한 금융규제, 금융당국의 제재 불확실성, 폐쇄적 관행 등으로 핀테크 산업의 규제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

○ 우리나라는 특히 사전적 금융규제 방식으로 인해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의 혁신 서비스 개발, 맞춤형 보안체계 구축이 어려워 IT 강국임에도 핀테크 산업 발전 지연\*

\* 미국 대표 핀테크 기업 페이팔(Paypal)은 1998년 설립, 우리나라 대표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Toss)는 2013년 설립

- 글로벌 전체 217개 핀테크 유니콘 기업 중, 미국, 영국, 중국은 각 112개, 26개, 8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2개 (토스, 두나무)에 불과(CB Insight, '22.3)

-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 순위는 '20년 18위에서 '21년 26위로 하락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 '21.11.24)

## 가. 3대 신산업 규제개선

## 1. 온라인 플랫폼

□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안 같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입점 업체와 소비자 후생을 낮추고 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플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온플법 도입 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거래액 감소 13.4조원, 생산 감소 18.1조원, 취업 유발 감소 22만명(전성민 가천대 교수, '21.8)

○ 글로벌 시장과 상이하게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기업 순위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선 산업 육성·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 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 필요

○ 글로벌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 규모가 매우 작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사전적·예방적 규제 도입은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시가총액 비교 : (국내) 네이버 53.7조원, 카카오 45.9조원  
(해외) 아마존 1,856.4조원, 구글(알파벳) 1,104.6조원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 모델 참조

## 2. 원격의료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

○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원격의료 관련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 규제로 전환하여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 허용

\*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직접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처방('20.2월~'22.1월)은 352만 3,451건 이뤄졌고, 1.3만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평균 매일 5천건 이상 비대면 진료 수행(보건복지부)

※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본 환자 및 의료인은 향후 활용 의향이 높게 조사됨. 비대면 의료 활용 경험이 있는 환자, 간호사, 의사는 향후 활용 의향이 각각 87.2%, 87.5%, 66.4%로 집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3.25)

- 전화, 화상통화를 활용한 원격진료(진단·처방) 뿐만 아니라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 촉진

\* 현행 의료법상 규제에 따라 원격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까지만 허용되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도 원격 진단 및 처방이 불가

\*\* AI, 빅데이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앱, 챗봇,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 상태를 측정·진단·모니터링·관리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3. 핀테크

-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의 육성·발전 환경을 조성
  - (조속한 망 분리 규제 완화) 운영, 개발, 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전규제 방식으로 적용되는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도모
    -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연구개발 부문의 망 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며,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 분리 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해나가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합리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데이터 규제 합리화로 금융 마이데이터서비스 고도화 도모
    - 신용정보 활용범위 확대와 이중 데이터 결합 프로세스 정비, 금융업 간 정보제공 항목 추가 등 규제 합리화
- 전통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先 산업 육성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금융업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장벽 제거

- 혁신기술에 기반한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단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개혁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은 시장 잠재력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다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환경이 조성되어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 기술사업화 단계별 주요 규제 :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임상시험, 기술표준 등) → 제품생산 (입지, 창업, 제조품목 인허가 등) → 마케팅(시장진입, 인증시험검사, 공공구매, 수입수출입 등)
- 정부 부처별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별 중장기 규제개혁 로드맵 구축
  - 정부-경영계-연구기관-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별 규제개혁 로드맵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규제개선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 2.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로의 전환

- 산업별 자율규제기구가 행동규범 및 규율체계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자발적 규율 준수를 촉진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의 전환 필요
  - ※ 자율규제는 전통적인 명령통제적 정부규제보다 효율성, 환경변화의 적응성, 전문성 등에 있어 우월한 것으로 평가(최성락,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7)
  - 정부는 신산업 특성을 감안해 직·간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별 자율규제기구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정립하되, 부작용 발생 시 사후 개입을 검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자율규제' 방식 구현
    - 전문가, 기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체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자율규제 모델 참조

[ 참고 ] 자율규제 유형(자료 : Julia Black,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1996)

-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주체와 정부와의 관계를 전제로 위임적·승인적·강제적·자발적 자율규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위임적 자율규제) 산업계 전체와 같은 일정한 집단이 정부가 설정한 틀 내에서 규범을 형성하거나 집행할 것을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방식
  - (승인적 자율규제) 규제 대상 집단 스스로가 규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
  - (강제적 자율규제) 산업계 자체가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입법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
  - (자발적 자율규제) 자율규제를 촉진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국가의 능동적인 개입이나 관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

### 3. 규제 총괄기구 신설

□ 첨단기술 변화에 따른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규제 총괄 기구를 원스톱(One-Stop) 창구로 신설

○ 신산업 특성상 기존·신규사업자 간 갈등, 시장참여자 간 법적 권리 충돌\* 신기술 등의 도입을 위한 제도·절차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 개편 시급

\* 저작권, 상표권,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 융복합 산업 특성상 새로운 기준이 미비하고 기존 규제와의 충돌로 이해 관계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빈번하여 규제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우리나라는 다원화된 규제개혁 추진기구\*로 인해 이해 상충, 중복 추진, 비전문성, 법 제·개정 지연 등 규제개혁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재부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 각 부처 규제개혁담당관실 등

- 미국(OIRA\*), 영국(BRE\*\*)과 같이 규제개선 추진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규제총괄기구를 신설,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 정보 및 규제업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받은 규제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기술, 정보 정책, 개인정보보호 및 통계 등 정책 영역 부문에서의 관리 감독함.
  - \*\*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중심으로 규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규제개혁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신설하여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 유치, 사회경제적 과급효과,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의 안착과 성장·발전을 지원해야 함.
  - 규제 총괄 범부처 조직을 신설(ex. 규제개혁실)하고, 민간 전문가(산학연, 기업규제 전문가) 등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 포함)가 지원하는 조직으로 구성·운영

끝.